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민지원사업 지원협의체 신설 근거 마련 등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주민지원사업 지원협의체 신설 근거 마련 등	3
※ 참고자료	
1. 「수도법」 제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24년 기준)	9
2. 상수원보호구역 개요	10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
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시행령 제18조 별표 1 관련)	12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4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Ⅲ. 검토의견

1. 주민지원사업 지원협의체 신설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안 제9조제1항),

② 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자격상실·정지, 파산, 직무 관련 특정 범죄로 일정 기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 ----- ----- ----- ----- ----- ----- ----- -----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
제9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
의를 거쳐 시·도지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의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수도법」 제9조1)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참고자료2:3)을 관리하는

- 1)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²⁾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³⁾이 있음(참고자료4).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재원 확보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⁵⁾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익을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및 제10조(재원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3)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오수시설관리, 마을회관 운영관리, 마을환경조성, 하절기방역, 마을수도 유지관리, 농자재 구입, 친환경 영농지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4) 「수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도법」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연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2024년 기준 39개 구역에 대해 20억원(국비 기준, 보조율 30%⁶⁾)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음.

[최근 5년간 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20	20	20	20	20

주1) 지자체 지원비율 30%(「수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주2)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비율 50% 적용

자료: 환경부

다만, 주민지원사업 결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⁷⁾ 등 주민지원사업의 수용성 문제가 제기⁸⁾되고 있음.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6) 2024년에는 평택시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비율 50% 적용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한 바 있고, 2024년 12월 평택시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7) 상·하류 사회적 가치 추정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정책 고찰(류문현 외3인, 2023.3.31.)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93%가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음.

8)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실질적 토지 소유자임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수계기금 관련 사항).

무등일보, “규제도 서러운데”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차별에 분통, 2024.4.26.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보호구역 소재지의 지자체 의회 의원 등이 참여⁹⁾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을 구성원 중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¹⁰⁾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수용성·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¹¹⁾에서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9)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10) 관리청은 시·도가 될 수 있으나 현재도 주민대상 소득증대사업 등 추진 시 시·군·구에서 마을주민회의 등 의견 수렴 후 시·도를 거쳐 계획이 승인되는 구조임.

참고로 「수도법」 제9조에 따라 대상사업을 신청받은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는 부산광역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1곳으로, 총괄 관리청은 부산광역시로 보고 있으나,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의 허가권자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시·군·구에서 마을주민회의의 견수렴 후 부산광역시로 제출하고 있음.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12)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방법¹³⁾,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5).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환경부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현재도 마을주민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에서 규정¹⁴⁾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주민 구성 비율, 보호구역의 특성, 지원 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정원(매립시설의 조성면적,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처리 규모에 따라 정원을 달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역주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2021.2.3.)」

5.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령 제17조)

3)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선정

○ 사업계획 수립시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선정 적정성 검토)

○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은 이장 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사업선정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여부 검토 철저

- 사업계획 수립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모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지원협의체 구성 시 운영상 비효율성과 일부 주민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9조의2제1항제1호는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공익성이나 고도의 신뢰, 경제적 신용이 특별히 요구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 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⁵⁾을 제시하였으나,

환경부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 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시행령 정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203312, 2024.8.28.)이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1

「수도법」 제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현황(24년 기준)

시·도	시·군·구	보호구역명
경기도	수원, 파주, 포천, 양주, 여주, 평택(이상 6)	광고, 문산, 포천, 의정부, 여주, 송탄(이상 6)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시,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이상 11)	강릉제2, 연곡, 옥계, 삼척, 도계, 원덕, 광동댐, 근덕, 달방, 쌍천, 남애, 원주, 인제, 남면, 기린,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 평창, 봉평, 대관령, 횡성(이상 24)
경북도	경주시(이상 1)	보문, 안강(이상 2)
대구시	동구, 달성군(이상 2)	공산, 가창(이상 2)
부산시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이상 4)	회동(이상 1) ¹⁾
경남도	거제시, 거창군(이상 2)	연초, 가조, 거창(이상 3)
전남도	순천(이상 1)	와룡(이상 1)
계	27개 지자체	39개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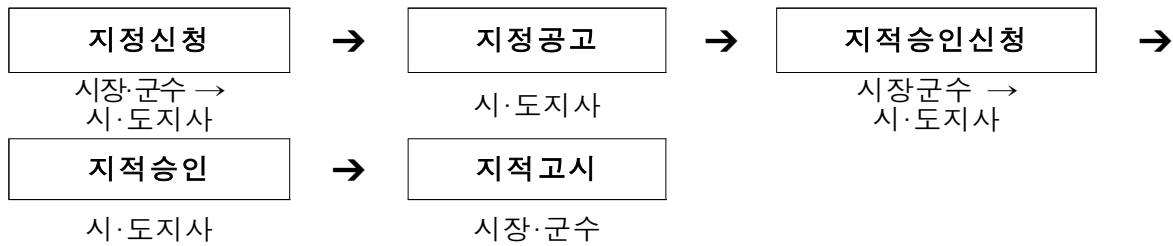
주1) 부산광역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총괄 관리청은 부산광역시로 보고 있으나,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의 허가권자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시·군·구에서 마을주민회의 의견 수렴 후 부산광역시로 제출하고 있음.

자료: 환경부

참고2

상수원보호구역 개요

- **(지정 근거 및 대상)** 「수도법」 제7조제1항(61.12.31 도입),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 대상
- **(지정기준)** ①하천수와 복류수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표준거리)±3km(수질상태, 개발잠재력, 취수량 등 고려), ②지하수는 반경 200m,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과 토양 투수계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③호소의 경우 만수위선으로부터 4km±3km
- **(지정 절차)**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 임의조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신청

- **(지정 현황)** 전국 265개소, 면적 1,117km²(국토의 1.1%, '24.12월 기준)
- **(규제내용)** 금지, 허가, 신고행위 구분(안·허가: 시장·군수·구청장, 감독: 시·도지사)
 - **(금지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법 제7조 제3항)
 - 가축의 방목, 수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세차행위 등 금지(시행령 제12조)
 - **(허가 행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대상(영 제13조)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용도변경
 - 입목 및 대나무 재배 또는 벌채, 토지 굴착·성토·형질변경 등
 - **(신고 행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대상(영 제14조)
 -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제거 또는 원상복구 및 공장 등의 용도변경

참고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기준 : '24.12월)

지 역	지정개소	면적(km ²)
계	265	1,116.89
서울	1	6.45
부산	1	88.50
대구	6	49.23
인천	—	—
광주	2	17.29
대전	1	77.71
울산	2	11.08
세종	—	—
경기	10	186.31
강원	47	95.14
충북	8	110.03
충남	6	5.87
전북	10	25.63
전남	58	184.63
경북	67	136.22
경남	35	120.99
제주	11	1.82

※ 여러 시.군.구에 걸쳐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1개소로 처리(팔당은 광주, 남양주, 양평, 하남에 분포하고, 대청호는 대전, 충북에 분포, 평택은 평택, 안성, 천안(충남)에 분포하고 있어 경기·대전·경기로 각 1개소씩 산정)

참고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시행령 제18조 별표 1 관련)¹⁶⁾

사업구분	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증대 사업	가. 농기계·<u>농기구</u> 구입 및 유지관리·<u>농기계</u> 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나.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뇨자원화 관련시설의 설치 다.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매입 및 농산물 저장·유통·판매시설의 설치·운영지원(주민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 사업	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나.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및 관리 지원 다.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구입 및 관리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라.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강장 등 사회 복지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및 관리의 지원 바. 무세제세탁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개인컴퓨터 지원,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단, 구입 제품은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구연한내에서 지원) 사. 주택의 개량, <u>심야보일러</u>, <u>태양열·광 설비</u>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아. 소규모 도로, <u>도시가스공급시설</u>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u>원거주민등(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은 마을회의</u>

	를 통해 포함 가능)에 대한 생필품, 전기료, 수도료(하수도료 포함),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난방비, 목욕비 등 지원(다만, 정보·통신비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청구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차.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가족 봉안시설 및 가족묘지 설치 지원(다만, 보호구역 거주민을 위한 것에 한함) 카.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 타.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 하.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환경오염감시, 쓰레기 수거 등) 거. 환경부장관이 주민 복지증진(체육시설 등)과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너. 마을화합행사, 경로행사 등 지원
육영사업	가.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나. 학자금·장학금 지급 다. 장학금 적립 라.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
기타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토지매수 포함) 또는 전업에 관한 지원사업 다.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안의 농경지 보상과 기득 하천 사용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

16) 자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환경부)

참고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

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